

호우 피해복구 지원...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-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전액, 그 외 토지는 절반 감면
-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*한다고 밝혔다.
 - *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(세종시, 청주시, 괴산군, 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, 익산시, 김제시 죽산면, 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)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
 -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, 창고, 농·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,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* 첨부자료1 참고
 - * 주거용 주택, 상가, 상업·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,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
 - * 예) 토지 경계복원측량(1필지, 300㎡)의 경우 약 41.8만원 소요
-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, <http://baro.lx.or.kr>), 및 전화(바로처리콜센터, 1588-7704)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 <공동>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유상철 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	박공열 (044-201-3479)
			주무관	고은정 (044-201-3486)
	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실	책임자	실 장	신서범 (063-713-1400)
		담당자	부 장	강재덕 (063-713-1401)
			과 장	도지찬 (063-713-1407)

참고 1

지적측량 신청방법

□ 감면 신청서류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2.8.28>

피해사실확인서					
발급번호: 제 호					
피해자	주소				
	성명	생년월일			
피해 내용					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용도					
제출처					
위 사람이 소유(경작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20 년 월 일					
신청인: 성 명 (인)					
생년월일					
주 소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읍·면장					
위 사실을 확인함.					
년 월 일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직인
*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러 3개월간 유효합니다.					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에 의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
-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
-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
-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□ 지적측량 신청 창구

회사	구분	신청방법
LX 한국국토정보 공사	방문	· 지적측량접수창구(시군구청 민원실)
	인터넷	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(http://baro.lx.or.kr) -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
	전화	·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-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,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
민간수행업체	전화 또는 방문	·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-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

참고 2 유사 감면사례

□ 집중호우, 태풍 피해 지원

- ① '20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7억원)
 - '20.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- ② '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.1억원)
 - '22.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 복구시 50% 감면
- ③ '22년 태풍(힌남노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0.6억원)
 - 태풍 피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의 복구시 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□ 산불피해 지원

- ① '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0.2억원)
 - '19. 5월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- ② '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.2억원)
 - '22. 3월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, 창고, 공장, 농축산·사업시설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이외 50% 감면
- ③ '23년 전국 동시다발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억원)
 - '23. 4월 전국 산불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, 창고, 공장, 농축산·사업시설 피해 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이외 50% 감면

□ 지진피해,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

- ①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8억원)
 - '17. 11월 경북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- ②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31.1억원)
 - '20. 3월 ~ '21.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% 감면